**총회 개요**

* 구성

총회는 회원자치단체의 대표로 구성되는 최고 의결기관으로서 격년제로 개최한다.

의장은 1인으로 하며, 연합을 대표하고 차기 총회를 개최하는 자치단체의 장이 당연직으로 선출되며, 임기는 총회 만료일까지로 한다. 단, 의장 유고시 직무는 소속자치단체의 부단체장이 대행한다.

※ 2000년 효고 총회까지는 총회를 개최한 자치단체장이 차기 총회 개최 시까지 의장직을 수행하였고 차기 총회 개최단체장이 부의장을 맡았으나, 4회 하바로프스크 총회 이후 현행과 같이 변경

* 기능
* 헌장 제 8조는 총회의 기능으로 10개 항목을 규정

1. 감사의 선출

2. 예산ㆍ결산 및 사업계획의 승인

3. 회원의 입회 및 제명 의결

4. 회비의 결정

5. 헌장의 개정

6. 기구의 해산 및 청산 결정

7. 차기 총회 개최에 관한 사항 결정

8. 사무국의 설치 장소 결정

9. 각종 사업계획 결정 및 집행

10.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 의사결정
* 각 회원단체는 동등하게 1개의 투표권을 가짐
* 총회의 기능 중 제1호에서 제8호에 명시된 사항은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회원 2/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그 외 기타사항에 관하여는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